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4년 6월 20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6조)
-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(안 제7조 제2항 제5호 신설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, 심의자료에 금고

- 세부 예치 현황 작성 조항 추가(안 제7조제3항, 안 제7조제4항 신설)
- 비(非)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부터 제11조 신설)
-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4조 제1항 제1호, 제5조, 제7조, 제12조부터 제2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*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※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*

- 의안명 :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
- 의결일 : 2023. 10. 23.
- 의결 요지(권고 요지)
 - ▶ 공금예금계좌 개설·운영(우리구 현재 운영 중)
 - 통합기금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와 자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금예금 계좌운영
 - ▶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

-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·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무를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
- ▶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
 -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조례에 규정
 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완화(우리구 지적 지자체 미해당)
- ▶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내실화
 - 비(非)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
 - 민간전문가 비율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 반영(광역 지자체에 해당)
- ▶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
 - (심의내역) 통합기금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도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화
 - (예치현황)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

○ 본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6조에서는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설치하되,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도록 명시함
- ▶ 우리구에서는 2024. 5. 8 기준, 이미 고금리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용중에 있음
-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

수용하여, 비기금 심의위원회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위원회인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.

-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운영방법 추가, 심의사항 보충, 심의 내용 관리 의무 명시 등을 규정함.
- 그 밖의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.

○ 주요 내용

- 1)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6조)
- 2)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(안 제7조 제2항 제5호 신설)
- 3)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의 관리의무를 명시하고,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 현황 작성 조항 추가(안 제7조제3항, 안 제7조제4항 신설)
- 4) 비(非)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부터 제11조 신설)

○ 타 자치구 현황

-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중.
- 기금 운용 24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 기금 관련 위원회 운용, 3개 자치구 비(非)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행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23.10.23.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개정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